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80
----------	-------

발의연월일 : 2026. 8. 13.

발 의 자 : 노종면 · 김주영 · 이재관
이주희 · 문금주 · 채현일
서영석 · 조승래 · 이정문
조계원 · 최민희 · 황정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거나 발행액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형사업자는 직접 결제수단을 발행하고 있고, 해당 결제수단에 충전된 금액의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하나의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고, 제3자 발행이 아니므로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하나의 가맹점에서 사용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제28조제3항제1호가목·나목).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본문 중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를 “재화”로 한다.

제28조제3항제1호가목 중 “자”를 “자로서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총발행액(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총발행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4호 및 제28조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이 법

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u>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u>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14. ----- ----- ----- ----- ----- ----- 재화 ----- ----- -----.
15. ~ 22. (생 략)	15. ~ 22. (현행과 같음)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과 등록) ① · ② (생 략)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과 등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③ -----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가. 하나의 가맹점(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

다. (생략)

2. (생략)

1. -----

가. -----

자로서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

나. -----
-----총발행액-----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	----------------